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급여의이용·제공및
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
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체계 개선대책(‘22.11.24)의 후속 조치로, 소재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의 전화번호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, 같은 법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,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또한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수기로 확인 중인 진폐위로금,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관련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·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마련(안 제7조의2 신설)

- 1) 보장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의2 제1항)

- 2)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없이
기간통신사업자에 확인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(안
제7조의2 제2항)
- 3)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시 전화번호 요청기관
과 요청목적, 제공받은 날짜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7조의2 제3항)
- 나.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
기간통신사업자가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「개인
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
명시함(안 제28조 제4항 신설)
- 다.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 시 이용가능한 전산망 또
는 자료(시행령 별표 1)에 진폐위로금,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에
관한 자료를 추가(안 별표1 제29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1조제1항제8호”를 “법 제11조제1항제10호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) ① 보장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이용하여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이하 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”라 한다)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.

②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기간통신사업자 각각에 대하여 전화번호 보유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고, 확인된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전화번호 요청기관
2. 전화번호 요청목적
3.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

제8조제2항 중 “법 제12조제1항제9호”를 “법 제12조제1항제11호”로 한다.

제12조제2호 중 “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사회보장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(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별표 1 제29호를 제30호로 하고, 같은 표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9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지급에 관한 자료, 「석면피해구제법」 제10조에

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에 관한 자료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을 말한다. 1. ~ 5. (생략)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) ① 법 제11조제1항제10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<u>제7조의2(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) ①</u> <u>보장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(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이용하여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이하 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”라 한다)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②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제</u>

	<u>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기간통신사업자 각각에 대하여 전화번호 보유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하고, 확인된 전화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전화번호 요청기관</u> <u>2. 전화번호 요청목적</u> <u>3.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날짜</u>
제8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)	제8조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별표 2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</u>	② <u>법 제12조제1항제11호</u> -----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사회보장정보)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	제12조(사회보장정보)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
2. <u>법 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(「사회보장기본 법」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 이하 같 다)의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</u> 3. ~ 8. (생략) 제2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2. <u>사회보장정보시스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. ~ 8. (현행과 같음) 제28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) ① ~ ③ (현행과 같 음) ④ <u>법 제11조 및 이 영 제7조의 2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으로부 터 협조 요청을 받은 한국정보 통신진흥협회 및 기간통신사업 자는 지원대상자의 발굴(지원대 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)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45